

1. 개정 이유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,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,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, 전상(戰傷)이나 공상(公傷)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, 직업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525호, 2023. 7. 11. 공포, 2024. 1. 12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4. 1. 00. 공포, 2024. 1. 12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절차를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제출 시 사진 첨부 내용 삭제
(안 제2조제1항)

-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시 사진을 제출함에 따라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삭제하고자 함

나.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(창)업 지원 신청절차 지정(안 제6조제2항 신설)

- 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구분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(창)업 지원 신청절차를 별도로 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대군인지원 신청서”를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서”로, “포함한다)에 사진(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) 1장을 첨부하여”를 “포함한다)를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중 “제대군인”을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대군인의”를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선,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.

“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”를 “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”로 한다.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“정부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를 “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제대군인지원”을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”으로

하고, 같은 서식 신청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훈청장

보훈지청장 귀하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병적증명서	수수료
		없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증 발급”을 “통보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제목 중·장기복무”를 “제목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을 “제대군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“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를 “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“민원24(www.minw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를 “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취업지원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중 · 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

발급번호		
제대군인	구분	등록번호
	성명	생년월일
용도 및 제출처	용도	제출처

위 제대군인은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 직인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유의사항

※ 이 확인서는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확인				
우편번호	주소		전화번호	팩스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지원신청) ①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본문 및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(이하 “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서식의 <u>제대군인지원 신청서</u> 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사진(가로 3.5센티미터, 세로 4.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)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2조(지원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서</u> ----- <u>포함한다</u>)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제대군인 확인서)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<u>제대군인</u>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.	제3조의2(제대군인 확인서) ① ----- ----- <u>중·장기복무 제대군인</u> ----- -----.
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	② ----- -----

수 있는 유족은 <u>제대군인의</u>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·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.	----- <u>중·장기복무</u> <u>제대군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취업지원 신청 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(취업지원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·직업상담, 취업알선,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.</u>
<u>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8조제11호,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,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.</u>	<u>③ 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